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내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화성시청소년수련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침 일부 지침을 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1월 28일

##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지침 제49호

### 화성시청소년수련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침 일부 개정

화성시청소년수련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 중 ‘과학영재육성’ 을 삭제한다.

제3조 중 ‘강사관련규정’ 을 삭제한다.

제4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한다.

교육프로그램 운영기간 중 법정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으며 별도의 보강을 실시하지 않는다. 다만, 강좌 진도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보강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0조 제1항 중 ‘지참’ 을 ‘제출’ 로 수정한다.

제10조 제2항의 준용 사항을 ‘화성시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에 관한 조례’ 에서 ‘화성시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’ 로 수정한다.

제10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2조 제3항의 준용 사항을 ‘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’ 에서 ‘소비자분쟁해결기준’ 으로 수정한다.

제13조~제18조를 삭제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]을 삭제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내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